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는

비영리섹터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사)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목차

01		
기부를 꺼리게 만드는 주식 증여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① 부자들 고액기부 막는 '세금 폭탄'	05
	② 기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돼야	08
02		
영리와 비영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도	① 기부받은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아닌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고 있다.	13
	② 재산총액이 늘때마다...비영리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하고 있다	16
03		
결산공시제도: 부처간 칸막이가 비영리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부처별 보고 및 공시 일원화 필요	21
04		
기부 선진국으로 이끌 3법	① 사회문제 해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산기부법' 제정	25
	② 21세기 디지털시대와 기부개념 확대에 맞는 '기부법' 제정	31
	③ 비영리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익위원회' 설립	34



01

기부를 꺼리게 만드는 주식 증여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자들 고액기부 막는 '세금 폭탄'(증여세)

05

기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돼야

08



1 부자들 고액기부 막는 '세금 폭탄'(증여세)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3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20억원,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중 1만1천주를 기부했으며, 김 의장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로 수익을 낸 기업 대표들이 주식 기부를 하는 곳이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현금기부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부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미국·영국 등 기부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식기부 사례가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으로 인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이 세운 재단과 공익법인 모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지만, 주식을 기부하면 세금을 물리고 있음. 특정 기업의 주식을 5~20%¹⁾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음.

최근 비영리법인 A단체는 (주)오뚜기로부터 주식 1만 7천주를 기부 받았으나 다음해 주식 평가액의 45%에 달하는 증여세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미국, 영국 등 기부선진국의 경우,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면세 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음.

<표 1. 선진국의 공익법인 주식 제한 규제>

	한국	특정기업 주식 5~20% 초과분부터 과세
	미국	특정기업 주식 20% 초과분부터 과세
	일본	특정기업 주식 50% 초과분부터 과세
	영국	상한선 없음
	독일	상한선 없음

<표 2.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

1)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상증세법 48조 2항)

-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경우
- 취득한 주식의 합계(과거에 동일 주식을 출연받은 사실이 있다면 누적합계)가 다음의 비율을 초과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10%
 - ①의 성실공익법인 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20%
 - 기타 공익법인: 5%

정책 제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세운 재단과 대중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야 함.

예를 들어 기업 경영권과 관련 없는 공익법인에 주식기부한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기준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의 계열사 우회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증여세 대신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30여년 전과 달리 지금은 대기업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겹겹이 도입되어 있어 훨씬 투명해졌고 미국 세법처럼 '의무 지출'이라는 제도를 뒤 공익법인의 재산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음.

※ 영국에서 설립된 자선재단 중 80%는 유산기부로 설립된 재단으로, 당해 수입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부 문화의 근본적 변화와 확산을 위해서는 선의의 기부자가 세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함.



언론보도

[중앙일보] '세금폭탄 여전'...한국, 버핏같은 '주식 기부왕' 접접산중

2020.09.25.

지난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카카오 주식을 기부했다. 김 의장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로 수익을 낸 기업 대표들이 주식 기부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현금기부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부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주식기부

미국·영국 등 기부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식기부 사례가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으로 인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이 세운 재단과 공익법인 모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자가 증여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특정기업 총 주식발생수의 5%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제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억원이 넘는 주식을 아주대에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던 고(故) 황필상 박사가 있다. 또 밀알복지재단은 주식기부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은 2015년 오투기로부터 주식 1만주를 기부받았으나 다음해 주식 평가액의 43%에 달하는 증여세가 발생했다. 밀알복지재단은 기부자와 특수 관계가 아닌 데다 해당 기업의 지배력 행사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법에 따라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밀알복지재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기업 총 주식발생수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밀알복지재단은 결국 2018년 8월 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 아래에서는 서구 선진국처럼 주식 증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 증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주식기부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주식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면세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투명성 높아져...규제 풀어야

기부 선진국의 경우 주식기부 면세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특정 기업 주식 5% 초과분부터 과세가 이뤄지지만, 미국은 20%, 일본은 50%가 기준이다. 영국과 독일은 상한선이 없다. 한국은 기업의 공익법인 지배력 우회 행사나 상속 목적을 막기 위해 주식기부 면세비율이 낮게 책정됐지만, 이는 오히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됐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올해 대규모 투자손실에 도 자신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29억 달러어치(약 3조8000억원)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가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은 기부 당시 주식 가치 기준으로 370억 달러(약 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대기업 집단이 세운 재단과 성격이 다른 공익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권과 관련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대기업의 변칙 증여와 공익활동보다는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동원될 우려가 있었으나 20여년 전과 달리 지금은 대기업 감시·견제 장치가 겹겹이 도입돼 있어 훨씬 투명해졌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사후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 부작용 상쇄 방안을 법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권혜림 기자,

노유진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연구위원

kwon.hyerim@joongang.co.kr

2 기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돼야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현재 기부자가 기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기부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며, 부동산 기부희망을 문의하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기부자가 부동산(주택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된 부동산은 공익법인의 이사회 승인 및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게 됨.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현금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려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주무관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본재산 감소는 운영 안정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허가받기 쉽지 않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기부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현금으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기 쉬운데 기부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기부를 꺼리게 됨.

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받은 부동산은 보통재산으로 관리되며, 현금화하여 기부자의 뜻에 맞게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이는 공익법인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정책 제안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함.

기부자가 기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기부한 금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함. 즉 전체를 기부하면 전액 면제, 50%를 기부하고 50%를 노후자금으로 쓴다면 기부금 50%에 대해선 면제해줄 필요가 있음.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기부를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여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기부한 금액에 한해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함.



언론보도

[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2020-10-21

기부활성화 가로막는 과세 실태

#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 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년 12조 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년 15조 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자산 1600만 원으로 출범한 홀트아동복지회다. 2016년부터 자산총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억 6000여만 원(올해 납부 예정 포함)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한다.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게 사용할 돈을 정부에 헌납한 셈이다.

이신영 홀트아동복지회 예산회계팀장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해 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①매각대금으로 인한 자산 증가 ②공사비 지출로 인한 자산 감소 ③시설 완공 후 자산 증가 등이 발생하고 세 차례에 걸쳐 등록면허를 새로 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밀알복지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는 공공 부문이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야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법이 적용되면서 비롯됐다. 즉, 등록면허 변경을 영리법인은 자본금 변동 시, 비영리법인은 재산총액 변경 시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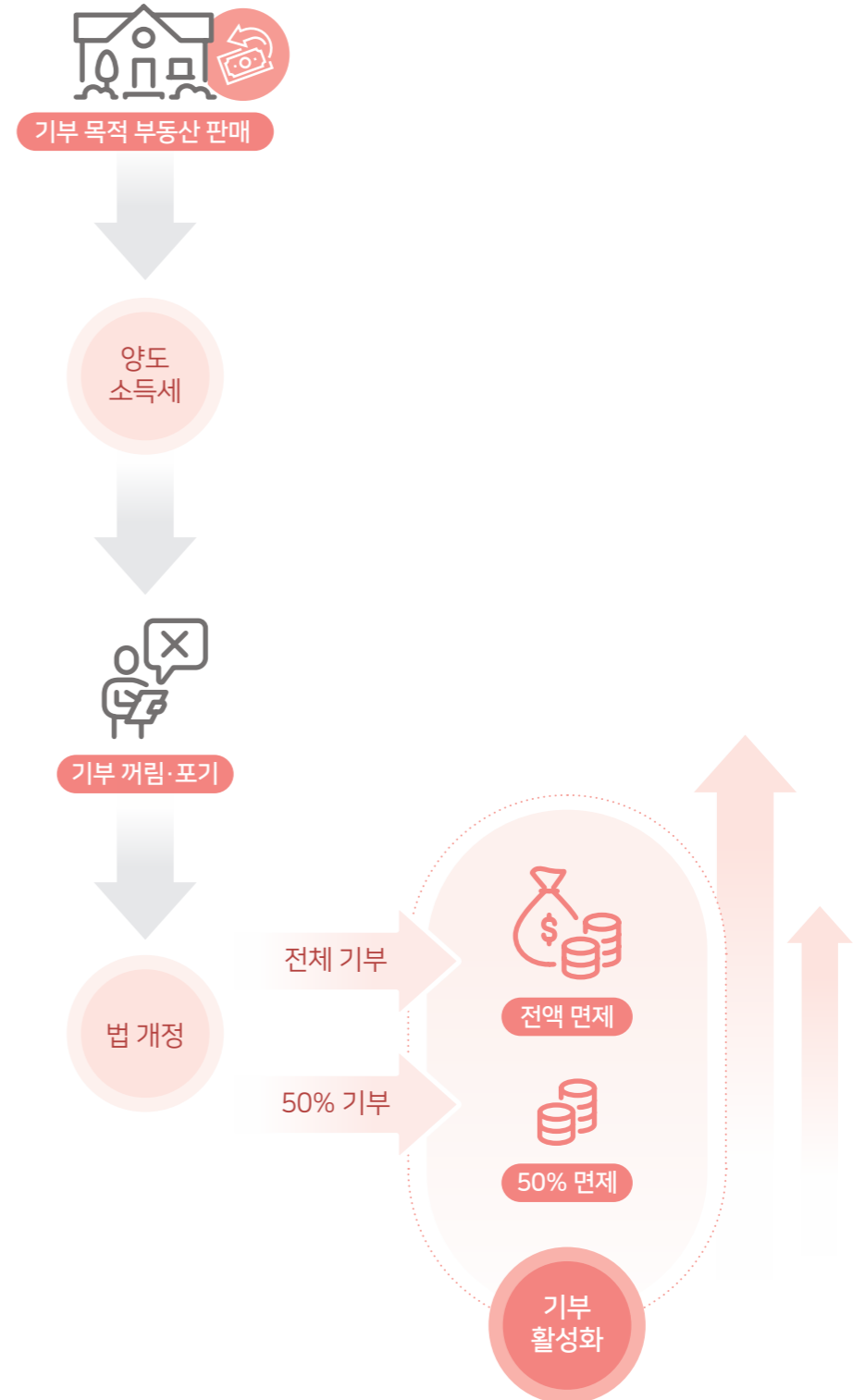
장태완 정안세무법인 총무로지사 대표세무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총액 증가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는 이미 설립등기를 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며 “이런 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조세감면제도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운 공익법인전문 회계사는 “문제의 핵심은 과세표준에 대한 개념 혼선”이라고 말했다. 민법에선 비영리법인 등기 때 자산총액으로, 지방세로 부과된 과세표준을 재산총액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기본재산 변동 때마다 등기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확대 해석해 자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과세표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며 영리법인에 부과하지 않는 등록면허세를 비영리법인이 등록할 때마다 부과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 시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기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예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호성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산기부 담당과장은 “현재는 기부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세가 부과돼 기부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를 기부하면 전액 면제, 50%를 기부하고 50%를 노후자금으로 쓴다면 기부금 50%에 대해선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부 부동산에 대해 3년 동안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는 면제해주지만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다. 최 회계사는 “기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기부 재산도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증여세를 부과하듯 기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유예한다면 공익법인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02

영리와 비영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도



기부받은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아닌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고 있다.

13

재산총액이 늘때마다 ... 비영리법인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있다

16



1 기부받은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아닌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기부받은 부동산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기부의 일환이며 매각하여 기부자의 의향에 맞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3년 동안 기본재산에 무조건 편입되도록 하고 있고 사실상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부자의 의향에 반하는 규정이며, 사실 기부받은 공익법인 입장에서 기부자를 설득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기부자의 사회환원 행위(부동산 기부)가 실제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사례

70대 A씨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한채를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에 사용하길 원하며 공익법인에 기부 의향을 밝혔으나, 3년동안은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듣고 기부를 포기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 해당 부동산을 5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 3년 안에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를 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 지방세법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기부 받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 감면됐던 것을 85% 감면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15%를 납부하고 있음. 반면 사립학교는 100% 감면이 유지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일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법인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100%를 납부하게 되는데 특히 주택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 없이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이것은 과도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 양쪽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 제안

지방특례제한법은 기부 부동산에 대해 3년 동안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는 면제해주지만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음. 기부받은 부동산도 현금기부와 같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증여세를 부과하듯,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유예한다면 공익법인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것임.

까다로운 처분 조건과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로 인해 부동산을 묵혀둠으로써 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부동산 등 자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공익법인의 기부받은 부동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기본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기부의 일환이기 때문에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 해주어야 함.



언론보도

[동아일보]“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2020-08-26

[함께하는 NGO & NPO]

복지법인 건물, 기본재산' 분류 매각-수익사업 사용 등에 제한... 출연 자산 활용 때 제약 많아 "현행법, 1950년대 시대상 반영, 기부 활성화에 맞춰 개선 필요"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7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해당 단체 이사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 위주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중하게 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기부 받은 부동산까지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들은 기부받은 부동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활용할 때 제약도 적지 않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기부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5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안에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를 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처분 조건과 세제 조항 때문에 기부 받은 부동산을 재산세 등 세금만 납부하며 묵혀 두는 경우도 있다.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가령 기부자가 카페를 기부했다면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후원 등 목적사업을 하면 된다"며 "수익사업으로 쓰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기부 받은 부동산뿐 아니라 출연 자산을 활용하는 데도 제약이 많다. 국내 한 장학재단은 오랜 저금리로 인해 최근 장학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

거엔 출연 자산의 이자로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했지만 수년 전부터 금리가 너무 낮아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재단 대표는 출연 자산을 허물어 향후 10년 동안 장학사업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기본재산은 허물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기부 관련 세제 등을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은 1950년대 제정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모금하고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관리 및 감독한다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특별후원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기부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자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에선 출연자나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자유롭다. 기부금품 등 자산을 은행에 잠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높여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야 한다는 게 재단이나 기부단체의 운영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재단이 당해 수입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산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미국은 기부자와 재단이 향후 10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성과를 공유한다"며 "한국도 기부금 중 기본자산 편입 비율을 제한하고, 당해 수입의 80%는 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2 재산총액이 늘 때마다 ... 비영리법인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등록세 면제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 이내로 새로 등기를 해야 함.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함.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사용할 돈을 정부 세금으로 내고 있는게 현실임.

예시

- 사회복지법인 A단체 사례: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해 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① 매각대금으로 인한 자산 증가 ② 공사비 지출로 인한 자산 감소
 ③ 시설 완공 후 자산 증가 등이 발생하고 세 차례에 걸쳐 등록면허를 새로 냈다"

반면 영리법인은 자산총액이 늘어나도 등록면허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음.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어 자산총액이 크게 늘어나도 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이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야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법이 적용되면서 비롯됐음. 즉, 등록면허 변경을 영리법인은 자본금 변동 시, 비영리법인은 재산총액 변경 시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정책 제안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재산총액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음.



언론보도

[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

2020-10-21



기부활성화 가로막는 과세 실태

#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 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년 12조 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년 15조 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자산 1600만 원으로 출범한 홀트아동복지회다. 2016년부터 자산총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억6000여만 원(올해 납부 예정 포함)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한다.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게 사용할 돈을 정부에 헌납한 셈이다.

이신영 홀트아동복지회 예산회계팀장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해 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①매각대금으로 인한 자산 증가 ②공사비 지출로 인한 자산 감소 ③시설 완공 후 자산 증가 등이 발생하고 세 차례에 걸쳐 등록면허를 새로 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밀알복지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이는 공공 부문이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야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법이 적용되면서 비롯됐다. 즉, 등록면허 변경을 영리법인은 자본금 변동 시, 비영리법인은 재산총액 변경 시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태완 정안세무법인 총무로지사 대표세무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총액 증가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는 이미 설립당기를 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며 “이런 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조세감면제도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윤 공익법인전문 회계사는 “문제의 핵심은 과세표준에 대한 개념 혼선”이라고 말했다. 민법에선 비영리법인 등기 때 자산총액으로, 지방세로 부과된 과세표준을 재산총액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기본재산 변동 때마다 등기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확대 해석해 자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과세표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며 영리법인에 부과하지 않는 등록면허세를 비영리법인이 등록할 때마다 부과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 시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기부 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 납부 유예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호성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산기부 담당 과장은 “현재는 기부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세가 부과돼 기부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를 기부하면 전액 면제, 50%를 기부하고 50%를 노후자금으로 쓴다면 기부금 50%에 대해선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부 부동산에 대해 3년 동안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는 면제해주지만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다. 최 회계사는 “기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기부 재산도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증여세를 부과하듯 기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유예한다면 공익법인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03

결산공시제도 :
부처간 칸막이가 비영리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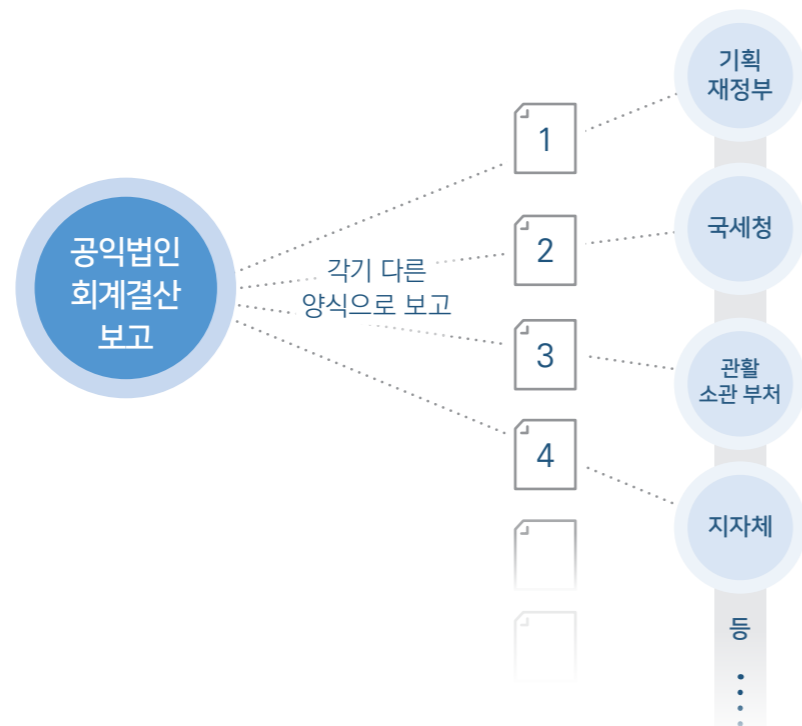
1 부처별 보고 및 공시 일원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K스포츠재단' 이나 '미르재단', 2020년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부실, 기부금 부정 의혹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음. 최근 21대 국회에는 비영리 관련 법안이 20건 이상 발의된 상태임. 정부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것임.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은 사업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주무관청에 등록허가를 받고, 기부금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고,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부금 결산보고 및 재산보고에 있어서는 국세청, 관할 소관 부처, 지자체 등에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음.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모금행위에 대해 2중 3중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할 소관 부처, 지자체 등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부처별로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많고 요구하는 항목이 일관적이지 않아 매번 계정명과 해당금액을 통합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등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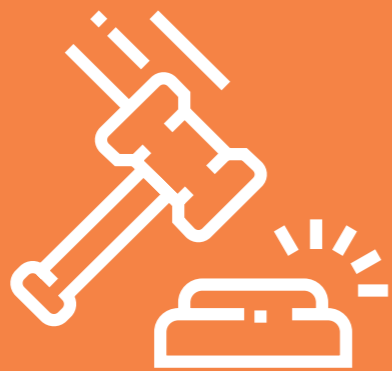


정책 제안

미국의 경우, 공익법인들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국세청 공시양식 Form 990을 기본으로 통합되어 있고 미국 국세청(IRS)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공익법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미국과 같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양식을 중심으로 보고양식을 통합한다면 공익법인은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공시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이렇게 미국(국세청), 캐나다(국세청), 영국(자선위원회), 호주(비영리자선위원회) 등 선진국들은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과 감독, 기부금 및 자산에 대한 결산보고, 위법에 대한 법인 취소 등 관리·감독이 일원화되어 있음.

비슷한 내용을 각기 다른 양식으로 각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보고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음.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의 경우,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으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고 소관부처, 지자체에는 국세청의 결산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일원화 해야 함.



04

기부 선진국으로 이끄는 3법

사회문제 해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산기부법' 제정	25
21세기 디지털시대와 기부개념 확대에 맞는 '기부법' 제정	31
비영리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익위원회' 설립	34



1 사회문제 해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산기부법 제정

유산기부란

유산기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하는 기부행위(유증에 의한 기부)를 말하며, 고령화, 핵가족 및 무자녀 부부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유산기부 요구가 증가할 것임.

유산기부 필요성



1

사회적 환경 변화
1인 가구, 저출산 증가, 무자녀 부부 증가,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2

코로나 19 장기화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 소득 감소, 경기침체 심화



3

비영리섹터 상황
코로나 19로 자선단체 기부금 감소, 그만큼 우리사회의 도움의 손길 감소

▶ 해결방안 : 유산기부는 위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음.

- ① 개인 재산이 사회로 환원되어 양극화 심화 조금이나마 해소
- ② 고액자산가 · 부유층의 사회적 기부 유도 (재산의 10% 유산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 ③ 개인 자산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 일자리 창출, 청년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창업 증가
- ④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활동 확대
- ⑤ 비영리섹터 발전 및 기부문화 활성화

유산기부 현황

유산기부는 주로 선진국에서 발달한 기부 방식으로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체 기부 금액에서 유산기부 비중이 각각 8%(40조)와 33%(3조3천억)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 비중 (2018년 기준)



영국의 유산기부법 (Legacy 10) 제도 도입 및 성공사례

영국과 한국의 전체 기부금은 각각 13조 2000억원, 12조 9000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유산기부 비중을 보면 33%와 0.5%로 큰 차이를 보임. 영국은 상속세 감면을 통해 부가 사회에 환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유산기부 비중이 낮은 이유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부해도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임.

영국은 2011년 11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Legacy 10' 입법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시에는 상속세 10%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음. 즉, 기부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경감하여 적용함.

2017년 영국의 유산기부로 모집된 기부금은 22억4000만 파운드(약 3조3000억원)에 달하며, 전체 기부금의 33%에 해당됨. 우리나라는 기부금 추계 방식으로는 정확한 유산기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0.5% 미만으로 추정됨.

영국 부유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상속세 감면으로 유산기부 참여 독려하고있으며, 이에 억만장자, 재벌 등이 레거시 10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정치권의 여당 · 야당 당수들도 레거시 10 운동에 동참, 대국민 캠페인 전개하여 성공함. 이처럼 유산기부 확산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유산기부 서약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어서 유산기부 캠페인 성공할 수 있었음.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 이유로 레거시 10 제도 반대하고 있음.

영국의 유산기부 입법화 성공요인

영국의 자선단체, 학계, 재계에서 강하게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영국 정부 차원에서 유산기부 입법화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효율성 평가를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결과, 정부입장에서는 줄어든 세수가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적은 사업들, 예를 들면, 노숙자, 이민, 인종차별, 난민, 저소득층, 장애인, 빈곤 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 자선단체가 맡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유산기부법이 정부차원에서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왔음. 유산기부 입법화 과정에서 영국 정부(재무부)가 반대하지 않았음.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한국의 레거시 10 입법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음.



미국 억만장자 '기부 서약 운동(The Giving Pledge)'으로 유산기부 확산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유산기부는 부의 양극화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한 바 있음. 미국의 경우, 2010년 6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사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기부 서약 운동(The Giving Pledge)'을 시작했음. 2017년 기준, 총 158명이 서명했으며, 금액은 무려 7,860억 달러(약 83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유산기부 인식조사 [갤럽조사. 2019.8]

- 모집단: 전국 만50세 이상 남녀
- 표본 크기: 1008명
- 표본추출방법: 성/연령/권역별 인구비례 할당추출
- 표본 오차: ±3.1%p (95% 신뢰 수준)
- 조사 방법: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조사 (유선 37%, 무선 63%)
- 응답률: 10.1% · 조사 기간: 2019년 8월 5~9일

조사 결과 26.3%가 유산기부 의향이 있으며, **51.6%는 상속세 감면 등을 담은 유산기부법이 제정되면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영국의 Legacy10(상속인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기존 법정 상속세에서 10%를 감면해주는 법)처럼 유산기부법 제정되면 재산 10%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1.6%가 '있다'고 응답함. 10% 상속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유산기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유산기부 시 재산 중 유산기부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10~19%'(17.1%), '50~59%'(15.4%), '30~39%'(13.2%) 순이었다. 남자(40.8%)가 여자(34.4%)보다, 고연령일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42.9%)가 있는 경우(37.3%)보다 높았음.

유산기부 의향자에게 희망하는 유산 사용처를 묻은 결과, '국내복지사업'이 61.7%로 가장 많았고, '환경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국제구호사업' '종교단체'는 10% 미만이었음.

소액 기부가 아닌 유산기부는 착한 마음과 선한 행위에만 호소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유산기부 활성화는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 상속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는 법과 제도 준비가 선행돼야 함.

국내 유산기부 입법화 기대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대안으로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기부 활성화 필요함.

상속세 감면을 통해 고액자산가, 부유층의 고액기부 · 유산기부 유도 가능

저소득층, 취약층 대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2021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최대 증액 분야인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99조원으로 전체 예산 중 35.9%에 달함.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민간 자원으로서의 기부금이 활성화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음.

유산기부 입법화에 따른 상속세 10% 감면에 따른 예산은 약 8000억~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예산이 비영리섹터에 투입됨으로써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창업,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우리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021년 정부 총 예산 : 555조원

1. 보건 복지 고용 분야 199조원		2. 일자리 분야 30조원	
기초생활보장	153,095억원	직접일자리	31,164억원
취약계층지원	45,185억원	직업훈련	22,754억원
공적연금	604,793억원	고용서비스	17,694억원
보훈	58,383억원	고용장려금	82,697억원
주택	336,465억원	창업지원	26,342억원
사회복지일반	14,703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25,387억원
아동보육	85,150억원		
노인	188,588억원		
여성가족청소년	11,466억원		
고용	257,092억원		
노동	92,226억원		
고용노동일반	5,574억원		
보건의료	32,231억원		
건강보험	107,988억원		
식품의약품안전	6,020억원		



언론보도

[중앙일보 시선집중] 기부 확산 위해 법 제·개정 시급 ... 선진국은 각종 세제 혜택

2019.11.21.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것이며, 결국 재정적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비중이 더 높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지원·유도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익법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 고액 기부, 유산기부 유도하는 선진국=

선진국은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세금은 줄지만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봐서는 얻는 게 많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영국이 개인기부 천국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은 2011년 '레거시10(Legacy 10)'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유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줌으로써 세금을 10% 깎아준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의 재산은 2011년 당시 약 30억 파운드(약 5조1300억원)로 영국에서 6위였다. 그는 2011년 '레거시10'에 참여한다는 생전 유언장을 썼다. 그가 전 재산을 물려준다면 재산의 10%인 3억 파운드(약 5130억원)는 자동으로 자선단체에 간다. 그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원래대로라면 10억7988만 파운드(1조8472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레거시10' 덕분에 9억7189만 파운드(1조6624억원)로 줄어든다.

우리나라도 기부 활성화 및 고액 기부 유도를 위해 'Legacy10'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도입하면 영국처럼 개인이 공익법인·자선단체에 생전 재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상속증여세는 47조9000억원이다. 이중 상속세는 20조5000억원, 증여세는 2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

다(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속보다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생전에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고액 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수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줄지만 거액의 기부금이 자선단체로 유입돼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므로 사회 전체로는 얻는 게 더 많다는 게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다.

◆ 상속세 감면, 기부연금제 도입 등 필요=자선단체와 전문가 등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 감면(영국의 Legacy10), 기부연금제도 도입, 유류분 제도 개선, 기부자 유족의 재단 활동 제한 완화, 유언의 요식성 완화 등을 꼽는다.

기부연금제란 개인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정착됐다. 1843년 도입된 미국의 기부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150억 달러를 상회한다. 기부연금 수령자는 총 9385명으로 평균 수급연령은 79세이고, 평균 14년간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금 모집자인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연금 약정계약 등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험사 등이 운영·관리하며 기부자나 가족에게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체계로의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일부를 본인 몫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다. 전통적으로 가족공동체 유지 기능, 상속인 부양 기능에 따라 인정되고 있으나,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인이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연령에 도달한 경우가 많아 부양 기능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도 시대변화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유산기부 관련 법안 제·개정안 3건 발의 = 20대 국회에는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유산기부 활성화와 관련한 3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유산의 사회환원 의향이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유산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자 상속재산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유산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족상속의 대상과 범위를 과도하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부·비영리법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법률 제·개정안이 34건 발의됐으나, 2건만 원안 가결되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제·개정안 34건이 발의돼 소관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라면서 "유산기부를 포함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제·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

현재 국내의 기부 관련 법과 정책은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특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나친 규제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모집비용을 기부금품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단체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정이자, 이런 규제는 합당하지 않다.

모집비용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고 비율을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 모금액 중에서 모집비용을 얼마나 썼는지를 정부가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면 된다.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총당비용을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절차를 일원화해 기부금품 모집·사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이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2 21세기 디지털시대와 기부개념 확대에 맞는 '기부법'제정

기부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우리 사회가 농업경제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할 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늘날의 기부 환경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digitization)를 배경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변모하였으나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술발전과 민간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기부금품법에서 기부의 개념이 물품과 현금으로 정의되어 있고, 부동산, 주식, 지적재산권, 미술품 등에 대한 기부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기부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기부금품법은 태생적으로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건국 후 1949. 11. 24 「기부통제법」 제정 -> 1951. 11. 17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정」, 1995. 12. 30. 전문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따라서 현행 기부금품법의 개별적 조항의 개정을 도모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부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기부에 관한 모법(母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부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자선단체 등의 기부관련 기부문화 활성화, 비영리단체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미미함.

현행 기부금품법(제13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의 비용을 10~15%로 제한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인건비 상승, 모집비용에 대한 단가 상승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기부개념의 확대

현행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개념은 상품권, 기프트 카드, 유가증권(수표 어음 등 화폐증권과 주식 채권 등 자본증권 포함), 부동산(주택, 토지), 물건(미술품, 골동품 등)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환가(換價)할 수 있는 적극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현행 '기부금품'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야 함.

기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우리나라에는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법이 없으며 육성하는 법도 없는 것이 현실임. 2017년 기부금 128억원을 횡령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과 같이 사기집단이 사단법인의 탈을 쓰고 비영리 활동을 하는데도 이런 단체를 감시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이 없음. 2017년 "새희망씨앗"과 "어금니아빠의 기부금 횡령 사건", 2020년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횡령의혹사건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관리, 육성 지원 정책의 미흡함.

우리사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한 나머지 비영리 공익법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함. 선진국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인 데이터를 산출, 행정지원 및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정책 제안

21세기 디지털시대, 스마트한 기부자, 국민들의 자산형태에 맞춰 현행 기부금품법이 전부 개정되거나 기부금품법을 폐지하여 기부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함.



언론보도

[동아일보 기고] 기부 활성화하는 기부금품법 개정 절실

2021-06-30

기부금품법은 오랜 기간 동안 △법 적용에 형평성이 부족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고 △기술발전과 민간 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위반 시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이렇듯 법이 현장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많은 민간 공익법인·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절차에 의한 모금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기부금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3조9000억 원이고 이 중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은 약 6000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 중 고작 4.3%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법이 왜 현재의 기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가 하는 관점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모금단체들이 제시한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러다 부정적 이슈가 생기면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기부금품법은 현실에서 계속 멀어져왔다. 그로 인한 부담도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에 자율적인 기부금을 확보하도록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모금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에 기부금품 관련법의 발의 건수는 21개에 이를 정도로 국회 차원의 기부금품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을 일부 제고하는 한정에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취지와 달리 실제 내용은 모금 현장과 동떨어져 모금단체들은 개정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에 의원안의 핵심 쟁점은 기존 공익 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를 기부금 모집·접수에서 사용 내역까지 확대하고 기부자가 요청한 사용 명세 장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다. 모금단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 명세 장부를 통째로 공개하라는 것은 모금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제 일변도의 사고다. 현행 기부금품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 처벌만 강화했을 때 분쟁의 소지만 키울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기부문화는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관련해 모금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몇 차례 가졌지만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나눔과 공유'라는 가치를 경험하고 공공영역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익법인·단체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 공익법인·단체는 대부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형태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매년 사업 계획부터 결과보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단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중복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불법·부정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기부를 통해 세금으로 메우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함께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던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넓히고 기부문화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기부문화의 싹을 잘라서는 안 된다.

엄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3 비영리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익위원회' 설립

한국 공익법인의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15,458	1,733	13,725

중앙행정기관 등록현황

(단위 : 개)

계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1	9	15	4	1	2	8	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1	7	52	23	188	195	12	38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733	279	182	43	12	202	182	50	11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10	32	3	1	1	7	12	8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5	18	2	1	9			

국세청 결산공시에 따른 공익법인 규모 (2020년)

구분	한국 공익법인
국세청에 등록된 공익법인 수	10,515개 (2020년 공시)
기부금 총액	13조원



현행 비영리 공익 법인의 관리체계의 문제점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현재 주무관청(민간공익단체의 주된 설립목적 을 관할하는 중앙관청)이 세제(稅制)를 제외한 일반적 감독을, 국세청이 세제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음.

주무관청별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재정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허가주의).

주무관청별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연도 결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고, 필요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음.

이러한 주무관청제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근래 자선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영국이나 호주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 유사의 통합적 관리기구를 창 설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2021.7.27.)과 윤호중 의원이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 6. 10.)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그 중 법무부가 발 의한 정부안은 하나의 통합관리기구가 아닌 주무관청제도를 그대로 둔 옥상옥의 규 제기관을 추가한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음(현재 법사위 계류 중).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1) 설립의 문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현재 주무관청이 세제를 제외한 일반적 감독 을, 국세청이 세제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음.

주무관청별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재정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허가주의).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법인의 목적 및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출연재산 및 기본 재산 확보 가능성을 주무관청이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함.

설립 허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 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함.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은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관리 또한 여러 부 처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정의기억연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무관청제는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되고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음. 특히 설립허가가 주무관청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재량권 오·남용의 소지가 큰 반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거의 없음.

주무관청별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연도 결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고, 필요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음.

(2) 운영에 있어서 문제

① 복수의 목적사업에 대한 허가

복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목적사업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함.

한 개의 공익법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임.

유사한 목적에 기초한 사업을 하는 경우 수 개의 주무관청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음.



사례

사회복지법인이 해외사업을 수행하고자하면 주무부처에 정관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에서 정관변경을 불허하여 단체에서는 부득이하게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서울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있음.

②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주무관청을 상대

비영리 공익법인은 설립이후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고, 기재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설립 이후 하나의 행정청이 아닌 다양한 행 정청을 왕래하면서 협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기획재정부	국세청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 공익법인 회계기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 신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정기후원자 관련 자동이체(CMS) 출금동의 증빙자료 (육성독취파일) 금결원에 제출	기부물품 모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기본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받음	회계결산 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③ 의무적 제출 서류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투명성 미흡

현행 제도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중복적이며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부처별로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한 개의 법인의 결산회계정보에 대해 각 기 다른 양식으로 관할 소관 주무부처, 지자체(구청), 국세청,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함.



(3) 비영리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의 불공평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하여 세제혜택을 달리 주고 있음.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에 기부한 개인기부자의 세제혜택은 소득 대비 기부금 인정한도는 지정기부금단체는 30%, 법정기부금단체는 100%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그리고 기업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10%, 법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50%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이는 국가에 소득세를 내는 국민(기부자)이 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는 행위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주고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과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 국내 월 1만원, 2만원을 기부하는 소액기부자들에게는 세제혜택 차이가 없으나 고액기부, 부동산기부 등 고액기부금인 경우에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간의 세제혜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4) 비영리 공익법인 전체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

우리나라에는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법이 없으며 육성하는 법도 없는 것이 현실임. 2017년 기부금 128억원을 횡령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과 같이 사기집단이 사단법인의 탈을 쓰고 비영리 활동을 하는데도 이런 단체를 감시하거나 총괄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가 없음. 2017년 "새희망씨앗"과 "어금니아빠의 기부금 횡령사건", 2020년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횡령의혹사건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데도 비영리 공익법인을 대변하거나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부처가 없는 것이 현실임.

우리사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한 나머지 비영리 공익법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함. 선진국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인 데이터를 산출, 행정지원 및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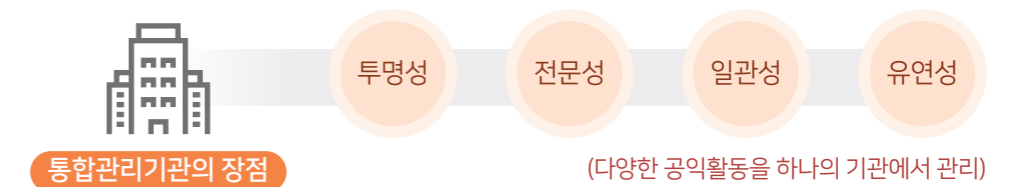
(5) 전문성과 통일성 부족

주무관청에서는 행정청별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공익성 내지 공익목적의 판단이 행정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관련 자료의 통일적 관리가 곤란함. 또한 주무관청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이나 감독의 실태 파악 및 감독에 관한 정보의 공유가 곤란함. 그에 따라 잠재적 추가출연자나 기부자가 어느 비영리 공익법인에 추가출연 또는 기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주무관청은 국가와 관련된 허다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까닭에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독에 전념할 수 없고, 보다 더 시급한 현안의 해결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므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여기에 담당 공무원의 단기(1-2년, 심지어는 6개월)의 보직순환은 담당 업무의 연계성 및 전문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 제안

하나의 통합관리기관(가칭: 공익위원회)을 설립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 할 수 있는 정부 행정기구가 필요함.



공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형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함.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공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됨.

공익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많은 공익법인의 정치화를 유발하여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근본을 훼손하는 개악이 될 소지가 있으며,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 제3섹터(비영리)가 제1섹터(정부)에 예측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됨.

영국, 호주의 성공사례처럼, 공익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한 비영리섹터 활성화 및 사회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언론보도

[중앙일보 비즈 칼럼]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

2020.11.26.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다. 지난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익위원회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현행 비영리 공익법인의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다. 민간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 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에서 설립 허가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별로 기부금의 행정 처리가 다르고 결산 보고 양식도 제각각이다. 성격이 다른 복수의 사업에 대해선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중복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비효율에 대해 단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비영리 단체들 사이에선 대체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공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비영리 공익법인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총괄기구'로서 역할이 핵심이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 법인격의 취득과 취소는 주무관청이, 공익성의 인정과 취소는 공익위원회가, 세제 관련 규제는 국세청이 관할한다. 공익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일원화와 맞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 '옥상옥'인 행정기구가 하나 더 생길 뿐이다.

공익위원회는 민간 공익활동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법무부 법안으로는 이런 기구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와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공익위원회를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의 정부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공익위원회의 적용대상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한정하는 것도 우려할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모금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런 단체의 모금액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다면 반쪽짜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기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기부금품 감독의 이중 잣대 등도 문제다. 현장에선 업무의 비효율과 혼선만 초래될 것이다.

공익위원회 설립에 대해 정부 부처와 비영리 공익법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은다면 공익위원회 설립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조선일보 오피니언] 시민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서두를 필요 없다

2021.08.17.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법은 접근법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 활동을 '반부패 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공익 활동과 연관성이 적은 법무부가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될 뿐 아니라, 시민공익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 역시 위원장 추천→법무부장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무부가 공익법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국제 구호, 빈곤 아동 지원, 인권, 환경, 평화운동 등 공익을 위하여 민간이 벌이는 비영리 공익 활동을 법무부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민간 공익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여가면서 통제보다는 격려 및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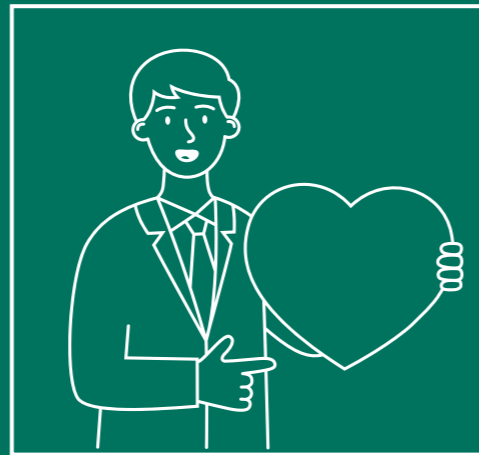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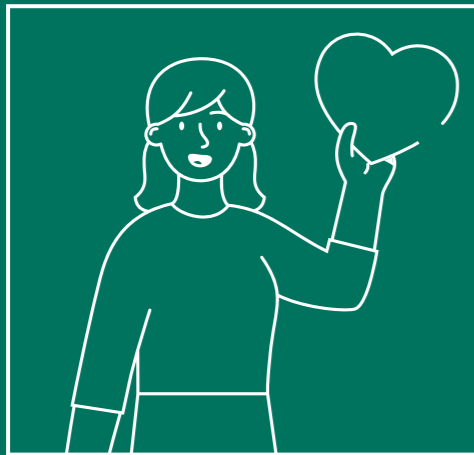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각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정권에 따라 또는 장관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대로라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순수하게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번 법률안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및 취소 등과 관련해 현행 주무 부처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공익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공익위원회에 맡기는 한편 위법 사항 발견 시 공익위원회에도 법인 취소나 임원해임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게 됐다.

비영리 공익법인이 역동성·책임성·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 호주 등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 각 부문에서의 전문성과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자기 책임 하에 클 수 있도록 통제보다는 격려 정책을 펴야 옳은 일이다. 비영리 공익법인들의 활동 기반은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기부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의 통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5년 전부터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왔고 정부 당국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안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들의 생각이나 입장과 너무 거리가 멀다. 법률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반민반관(半民半官) 체제로 시민공익위원회를 운영하되 민간이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을 내걸고 사익을 취하는 일탈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일, 그리고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훈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소개

창립 : 2009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등록 : 2012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정회원 : 70개 단체

협력기관 · 국제교류협력기관 : 104개 기관

회원단체 모금액 : 총 1조원

회원단체 후원자 수 : 약 400만명

자선(Charity)이란,

“대중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원으로 (1) 사회복지 (2)국제개발 (3) 문화증진 (4) 교육증진 (5) 화해, 상호존중 (6) 동물복지 (7) 환경증진 (8) 에드보커시 등 공익활동을 자선(Charity)이라하며, 자선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을 자선단체라고 한다.

자선단체협의회 미션

1. 한국의 자선(Charity)단체들의 협의체로 자선의 역할과 기능을 범사회적으로 알려 시민의 사회공헌 참여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시민문화 확대 및 나눔 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자선(Charity)단체 회원간의 상호 교류협력 및 교육을 통해 한국 자선(Charity) 단체간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고유목적사업 :

1. 비영리 · 기부 연구조사 · 정책개발 사업
2. 실무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사업
3. 실무자간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의 장 구축 및 활성화사업
4. 자선(Charity)단체 조직운영,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가이드라인 개발 · 교육사업
5.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및 홍보 활동
6.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 · 중소기업 자선(Charity)단체 지원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진국 기부문화 스터디를 위한 해외연수사업
8. 유언장 쓰기 문화조성 및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
9.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임원 구성

구분	임원 명단
이사장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
공동대표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이제훈 (어린이재단 회장)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
	유원식 (기아대책기구 회장)
이사	강대성 (굿피플 상임이사)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이수연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진숙 (동방사회복지회 회장)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박용준 (글로벌케어 회장)
감사	윤종선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상임대표)
	조현세 (헬프에이지 회장)
사무국	김희정 (사무총장)

회원단체(70개)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컴패션, 세이브 더칠드런, 기아대책기구, 밀알복지재단, 굿피플, 하트하트재단, 한국해비타트, 글로벌케어,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다일공동체, 부스리기사랑나눔회, 러빙핸즈, 메디피스, 휴먼인러브, 아프리카미래재단, 월드투게더, 위드, 엔젤스헤이븐, 열매나눔재단, 열매나눔인터내셔널, 한국실명예방재단, 하나를위한음악재단, JA코리아, 희망의망고나무, 생명누리, 아산나눔재단, 비전케어, 한국옥스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림화상재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부,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BF World, 국경없는교육가회, 아름다운가게, 미래숲, FRIEND아시아, 한국국제봉사기구, BMW미래재단, 헬프에이지, 온해피, 한국펼벽재단, 세이프키즈코리아, 코피온, 사랑의달팽이, 국제아동돕기연합,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한국컴패션, 함께걷는 아이들, 컨선월드와이드, 함께하는사랑밭, 팀엔팀, CJ나눔재단, 삼일미래재단, ADRF(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상아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희망의 러브하우스, 구세군대전혜생원, 동광육아원,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력단체(76개)

비영리단체 · 회계법인
컨설팅기관 · 대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바보의나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포럼, 웰다잉문화운동, 플랜코리아, 한국자원봉사문화, 한국희망재단, 사랑나눔의사회, 유엔난민기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드휴먼브리지, 더멋진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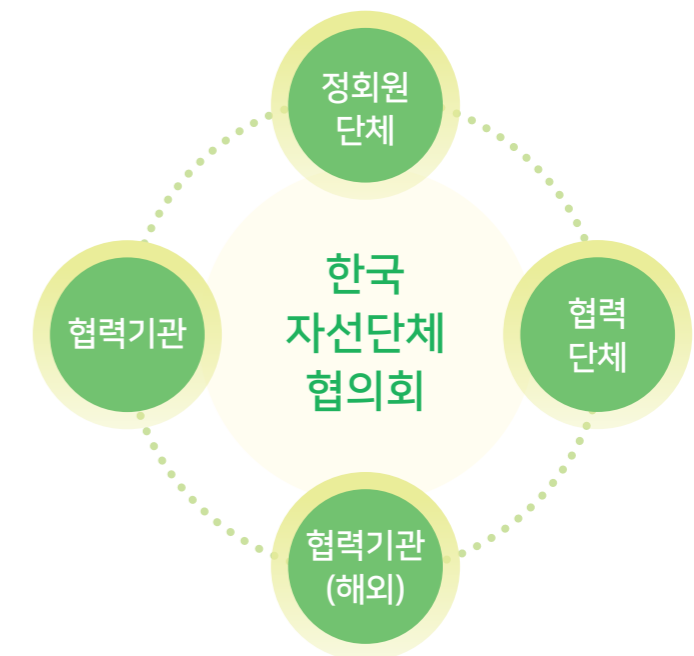
국제옥수수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사회연대은행,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사회복지법인 미동, 한국심장재단, 일가재단, 한국소아암재단, 사단법인 월드에이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그린피스, 푸르메재단,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 함께만드는세상, (사)제주올레,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한국의료지원재단, 희망브리지 한국재해구호협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휴먼트리, 회계법인 더함, 한국심장재단, 비영리 컨설팅 웰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자원봉사협동조합,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사회복지협의회, 풀뿌리희망재단, (사)나눔과 기쁨, 나눔국민운동본부, (사)시민, 서울NPO지원센터, (재)동천, 외국어대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 KCOG, (재)노무현재단,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연세대학교,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실대학교, 구세군, 글로벌비전, 글로벌투게더, 더프라미스, 나눔인터내셔널, 국제사랑의봉사단, 사랑의집수리, 아시아협력기구, 지구촌나눔운동,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심장재단, 한국선의복지재단, 이랜드복지재단 한끼의식사기금, 유진벨재단

협력기관(해외)

UN DPI, 영국 자선위원회(정부), 호주자선비영리위원회(정부), 싱가포르 자선위원회(정부), 영국자선재단, 영국자선재단협의회, 미국파운데이션센터, 미국BBB, 미국가이드스타, 미국 채리티네비게이터, 영국 CAF, 미국 InterAction, 영국 암연구재단, 영국세이브더칠드런, 영국유니세프, 영국심장재단, 미국재단협의회, 호주자선단체협의회

협력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코이카, 문화체육관광부



고유목적사업 추진 활동들

1. 정책연구 · 현황조사 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총람 및 한국 복지국제개발 총람발간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 한국의 28개 정부부처에 분포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 분석
- 비영리 재무회계 기준안 관련 연구
- 유산기부 활성화 정책 연구
-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유산기부 정책 및 현황, 한국의 입법과제 정책 연구
- 기부법 제정에 관한 정책연구
-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조사 [갤럽조사]
- 비영리법인 관리 개선방향 연구
-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대한 정책연구

2. 정책포럼 · 토론회

-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여야 국회의원 23명 회원, 100개 비영리단체 회원) 창립
- 공동대표 : 원혜영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이일하 이사장(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 국제나눔문화선진화 컨퍼런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 NPO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 공익법인 정보공시양식 통계활용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익법인 재무회계 투명성 및 효율성 간담회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양식 개정안 기획재정부에 연구보고서 및 의견서 전달
-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
- [정책세미나] 저출산 · 고령화시대 : 자선단체 유산기부를 논하다
- [정책세미나] 저출산 · 고령화시대 : 비영리섹터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전략

3. 입법활동

- 기획재정부의 외부감사인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 법무부 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의견서 (법무부 및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한정애의원안)에 대한 의견서
-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국힘당 김형동의원대표발의) 법률안 발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공익법인의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 유산기부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
- 유산기부, 공익위원회, 기부금품법, 외부감사인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칼럼
-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대표발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 지방세법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활동
-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는 「비영리섹터 발전 및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 발간

4. 네트워킹 사업

- 비영리 공익법인 : 국내 1,000개 단체와의 네트워킹
- 기업/기업재단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재단 등
- 정부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국세청,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 학회 : 한국비영리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 협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KCOC
- 국회 네트워크 :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창립(2014.5) 및 활동 (2014년 5월 ~2020년 4월)

[주요 네트워킹 사업]

- 시민단체-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소통과 나눔 파트너십 페어 (2010년~2017)
- NPO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컨퍼런스 (2012년 이후 지속)
- 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개최 (2012년 이후 지속)
- 유산기부활성화컨퍼런스 개최 (2017년 이후 지속)

5. 역량강화교육사업

- 자선단체 CEO 아카데미, 자선단체 CEO 포럼
- 비영리 모금, 조직운영, 재무회계 관련 교육, 컨설팅, 소그룹 코칭 교육
- 미국, 영국, 호주 NPO 기관 탐방 스터디 투어
- 중간관리자 대상 성과관리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
- 정부, 기업, 민간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법 교육
- 교육 수강생 누적 1,000여개 기관에서 15,000명 교육 수료

6. 선진국과의 국제교류사업

- 2016 UN NGO DPI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공동조직위원장 단체로 참여함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NPO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 기부문화 선진국인 영국을 통해 영국의 기부문화, 비영리 모금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선진 사례 및 한국적 적용 등을 통해 한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및 선진화 모색
- 자선단체 실무자, 단체장 해외연수사업 : 매년
- 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2013년 이후 지속)

7.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MOU 체결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 기부/비영리 관련 법적 쟁점 및 법개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및 공동연구
- 삼덕회계법인 : 중견·중소 단체 외부 회계자문, 컨설팅, 회계상담서비스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유언장 쓰기 문화조성 및 유산기부 활성화 캠페인
- 웰다잉문화운동 : 유언장 쓰기 문화조성 및 유산기부 활성화 캠페인

8.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개발

- 자선단체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29개 항목의 운영지침가이드라인 개발

9. 유언장 쓰기 문화조성 및 유산기부 활성화 캠페인사업

- 2018년 11월 ~ 현재까지 추진 중
- 국회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에서 영국 유산기부 전문가 초청
- 영국 유산기부 스터디 투어
- 유산기부 가이드라인, 유산기부 50문 50답 제작, 배포
-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 갤럽조사, 전국 남녀 1,008명)
- 유산기부 캠페인 TV 광고(TV조선, 채널A, MBN), 중앙일보와 연계 캠페인, 유산기부센터 홈페이지 구축
-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공동 유산기부 캠페인 추진.
- 유산기부법 제정 및 상속세 감면 등 세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웰다잉문화운동 MOU 체결
- 『유언장 쓰기 문화조성 및 유산기부 활성화 캠페인』추진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국회, 금융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 중
- 유산기부 · Living Legacy 아카데미 1기 개설

10.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단체 역량강화 교육사업

- 전국 비영리단체 종사자 대상 모금, 홍보, 회계, 사업제안서 작성, 중간관리자 교육, CEO 포럼 등 주제별,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특히 모금교육과정은 기초과정(3주) 실습과정(4주), 코칭/컨설팅(3주)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됨

11. 비영리단체 대상 무료 회계 교육 및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 2021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 및 기부금 투명성 정책 강화됨에 따라 비영리 전문 회계법인 “더힘”과 업무협약 체결
- 2021년 개정되는 세법, 회계기준, 국세청 공시 등록방법 등 회계서비스 제공

1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 한국나눔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일보와 공동주최)
- 대한민국 착한기부자상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주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 부귀빌딩4층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연락처 TEL 02-735-0067~9

FAX 02-735-0065

E-mail npokorea@npokorea.kr

Web www.charitykorea.kr



(사) 한국자선단체협의회

03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
(교북동, 부귀빌딩) 4층

| 문의 | 전화 02-735-0067~9

| 이메일 | npokorea@npokorea.kr